

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 
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363
----------	------

2016년 9월 9일  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16. 8. 12.
- 제출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- 회부일자 : 2016. 8. 16.
- 상 정 : 서울특별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 
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(2016. 9. 8.)  
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수정안발의 및 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(교육행정국장 이무수)

### 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을 적립·조성하고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 제8조 및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에 따라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함

○ 2016년도 건립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을 위한 안정적 재원 조성을 위해 지출계획 없이 기금을 적립함

- 자금운용계획은

공유재산 매각대금 82억 877만원을 적립하고

예상 이자수입 3,382만원을 포함하여

총 82억 4,260만원을 적립함

## 나. 기금수지 총괄

(단위 : 천원)

수입 계획			지출 계획		
항목	'16년 수입액	항목	'16년 지출액		
합계	8,242,600	합계	8,242,600		
출연금	8,208,775	고유목적사업비	0		
보조금	0	융자금	0		
차입금	0	인력운영비	0		
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	0	기본경비	0		
예탁금상환금	0	예탁금	0		
예치금회수	0	예치금	8,242,600		
예수금	0	차입원리금상환	0		
이자수입	33,825	예수금원리금상환	0		
기타수입	0	기타지출	0		

※ 전년도 수입 및 지출 없음

## 다. 기금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장	관	항	목	'16년 수입액	전년도 수입액	증감	산출내역
수입합계				8,242,600	-	8,242,600	
200 세외수입				33,825	-	33,825	
		210 경상적세외수입		33,825	-	33,825	
		216 이자수입		33,825	-	33,825	
		216-01 공공예금이자수입		33,825	-	33,825	시교육청 금고 예치금 이자 33,825,000원
7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				8,208,775	-	8,208,775	
		720 내부거래		8,208,775	-	8,208,775	
		721 전입금		8,208,775	-	8,208,775	
		721-03 기타회계 전입금		8,208,775	-	8,208,775	

## 라. 기금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분야	부문	정책	단위	세부	편성목	'16년 지출액	전년도 지출액	증감
지출합계						8,242,600	-	8,242,600
일반 공공행정						8,242,600	-	8,242,600
		일반행정				8,242,600	-	8,242,600
		재무활동				8,242,600	-	8,242,600
		보전지출				8,242,600	-	8,242,600
			시교육청 금고예치			8,242,600	-	8,242,600
			602-01예치금			8,242,600	-	8,242,600
			예치금			8,242,600	-	8,242,600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엄지운)

- 동 기금운용계획은 지난 제268회 정례회중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가 의결됨에 따라 교육청 신청사<sup>1)</sup> 및 연수원<sup>2)</sup> 건립을 위한 적립성 기금을 운용하고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것임
  
- 동 기금운영계획의 경우, 수입계획은 99.6%를 출연금(82억 800만원)으로 편성하고, 지출계획은 전액 예치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
  - 지난 제268회 정례회중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가 의결되어 적립성 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이를 운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, 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

#### 가. 세출과목을 수입항목에 혼용

-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수입을 “출연금”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실제

---

#### 1)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개요

- 위 치: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68번지(구 수도여고 부지)
- 부지면적: 13,180.7㎡
- 건축규모: 45,665㎡ 내외(지하 2층, 지상 12층)
- 총사업비: 1,247억원
- 사업기간: 2016년 ~ 2020년

#### 2) 연수원 건립 개요

- 위 치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135번지(구 신창중 부지)
- 부지면적: 16,335㎡
- 건축규모: 4,800㎡ 내외
- 총사업비: 97억원

수입계획에는 “기타회계 전입금”으로 편성하고 있음

- 행정자치부의 「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따르면 내부거래의 경우 세입 즉, 받는 회계의 대응과목을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금수입계획의 편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

○ 다만, 관련 조례<sup>3)</sup>중 기금의 재원을 “출연금” 등으로 명시하고 있고, 기금조성계획이나 기금수지총괄의 경우에도 세출과목인 “출연금”을 세입과목에 까지 혼용하여 기재하고 있음

- 이는 동 기금의 주요재원이 “출연금”이라는 것 일뿐 세출과목인 “출연금”과 세입과목인 “기타회계 전입금”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인 바, 향후 “출연금”과 “기타회계 전입금”이 혼용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## 나. 적립성 기금에 대한 자원관리 필요

○ 지출항목의 경우, 금년도 운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82억 4,200만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임

- 다만, 일반적으로 예치금은 수입과 지출의 차액에 대해 단기간 일시 보관하거나 운용하는 자원인 바,

3)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 제3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(이하 “교육비특별회계”라 한다) 소관 공유재산의 처분대금

**2.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**

3. 기금의 운용수익금

4. 그 밖의 수입금

- 동 기금이 청사신축을 위한 적립성 기금인 만큼 전액 예치금으로 운용하는 방안 뿐만 아니라 예탁 가능한 재원에 대해서는 예탁금으로 편성하고, 실제 금년도에 지출될 재원에 한정하여 일부를 예치하여 운용하는 방안 혹은 예탁 후 필요시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일부 예치하는 방안 등 보다 다양한 적립금 확충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

#### 다. 관련 조례에 대한 정비 필요
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는 기금의 재원을 출연금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서 출자·출연기관 등 특정 대상에 한정하여 편성하고 있음<sup>4)</sup>
- 또한 동 기금의 경우, 실제 기금수입은 “기타회계전입금”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, 조례상 출연금으로 기재하고 있어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<sup>5)</sup>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 대상여부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
- 실제 동 기금운용계획안중 **자금운용계획과 기금수지총괄**에는 **출연금**을 편성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어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출연금 편성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이후,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과목에 출연금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나

4) 행정자치부, 「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, p.120

5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- 동 기금으로 전출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출항목에는 출연금 대신 “기금적립”으로 기재하고 있어 사실상 “출연금”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른 의회의 사전동의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
- 따라서 기금재원을 보다 명확히 운용하기 위하여 현행과 같이 출연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기금적립이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기금재원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#### 5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동의안 발의

- 일 자 : 2016. 9. 8.(목) (제1차 예결특위)
- 발 의 자 : 오승록 부위원장
-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- 수정내용 : 별첨

◇ 첨부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·의결 결과 1부.

#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363
----------	------------

2016년 9월 8일  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## 1. 수정 이유

「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」에 대하여, 교육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.

## 2. 수정 주요 내용

「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」에 대하여 별첨 심사·의결 내역과 같이 수정·의결한다.

◇ 첨 부 : 「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」 예결위 심사·의결 내역 1부. 끝.



[붙임]

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 
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·의결내역  
(2016. 9. 8.)

□ 총 규모

(단위 : 천원)

구분	기금운용계획안	심사·의결내역	증감액
수입	8,242,600	5,933,112	△2,309,488
지출	8,242,600	5,933,112	△2,309,488

□ 수입계획 감액내역

(단위 : 천원)

목	운용계획안	심사·의결내역	감액	비고
기타회계 전입금	8,208,775	5,908,775	△2,300,000	
공공예금 이자수입	33,825	24,337	△9,488	
계	8,242,600	5,933,112	△2,309,488	

□ 지출계획 감액내역

(단위 : 천원)

목	운용계획안	심사·의결내역	감액	비고
예치금	8,242,600	5,933,112	△2,309,488	
계	8,242,600	5,933,112	△2,309,488	